

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공고

광명시에서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3.

광 명 시 장

1. 모집개요

○ 신청기간: 2026. 7. 6. ~ 2026. 7. 17.

※ 방문접수: 월 ~ 금요일 09:00~18:00 (공휴일 제외)/ 점심시간 제외(12:00 ~13:00)

※ 온라인접수: 상기 신청기간

○ 지원내용: 대출금의 1억 5천만원 범위 내

- 신혼부부: 대출금의 전세 2.5% 이내, 월세 2.7% 이내

(최대 전세 125만 원/ 월세 135만 원)

- 청 년: 대출금의 전세 1.2% 이내, 월세 1.4% 이내

(최대 전세 60만 원/ 월세 70만 원)

○ 신청방법: 광명시청 홈페이지(www.gm.go.kr) 온라인 신청

신청 및 사업 (주택과 방문접수[지하1층 종합민원실 민간임대주택팀] 가능)

페이지 바로가기



※ 광명시청 홈페이지 경로 :

분야별 정보 > 부동산/도시개발 > 주택 > 신혼부부 및
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

2. 지원대상: ‘공고일 기준’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

구 분	신 혼 부 부	청 년	비 고
대상자격	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-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	- 19세 ~ 45세 이하 -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	무주택자
대상주택	-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(※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㎡ 이하에 한함) -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 (월세인 경우 [(임대료×12)÷4.5% + 보증금] 으로 전환하여 계산)	-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(※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㎡ 이하에 한함) -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(월세인 경우 [(임대료×12)÷4.5% + 보증금] 으로 전환하여 계산)	광명시 소재
주소기준	-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 (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 -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	-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 (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 -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	
계약기준	-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(또는 배우자) 계약으로 한정	-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	
소득기준	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)	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1인가구)	아래표 참조

○ 소득기준(세전소득)

구 분		소득기준(년)	소득기준(월)
청년	1인	55,392,000원 이하	4,616,000원 이하
신혼부부	2인	90,708,000원 이하	7,559,000원 이하
	3인	115,764,000원 이하	9,647,000원 이하
	4인	140,292,000원 이하	11,691,000원 이하
	5인	163,236,000원 이하	13,603,000원 이하

3. 지원 제외 대상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- 공공임대(국민임대주택·영구임대주택·장기전세주택·행복주택·매입임대주택·전세임대주택 등) 거주자
- **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(버팀목 대출 등)**
-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
-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‘신용·일반대출 용도’ 인 사람
-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(분양권이 있는 사람, 주택 소유자 등)

4. 지원내용

- 지원내용: 대출금의 1억 5천만원 범위 내
- 지원금리 기준

구분	연소득 구간	전세가구 기준 지원금리	월세가구 기준 지원금리
신혼부부	0 ~ 2,000만 원 이하	2.5%	2.7%
	2,000만 원 초과 ~ 4,000만 원 이하	2.1%	2.3%
	4,000만원 초과 ~ 6,000만 원 이하	1.7%	1.9%
	6,000만 원 초과 ~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	1.3%	1.5%
청년	0 ~ 1,250만 원 이하	1.2%	1.4%
	1,250만 원 초과 ~ 2,500만 원 이하	1.0%	1.2%
	2,500만 원 초과 ~ 3,750만 원 이하	0.8%	1.0%
	3,750만 원 초과 ~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	0.6%	0.8%

※ 연소득 구간의 기준 중위소득 180% : 1년 간의 소득을 반영하여, “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% × 12개월” 로 계산

○ 1회 최대 지원금액

구분	연소득 구간	전세 기준 1회 최대 지원금액	월세 기준 1회 최대 지원금액
신혼부부	0 ~ 2,000만 원 이하	1,250,000원	1,350,000원
	2,000만 원 초과 ~ 4,000만 원 이하	1,050,000원	1,150,000원
	4,000만 원 초과 ~ 6,000만 원 이하	850,000원	950,000원
	6,000만 원 초과 ~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	650,000원	750,000원
청년	0 ~ 1,250만 원 이하	600,000원	700,000원
	1,250만 원 초과 ~ 2,500만 원 이하	500,000원	600,000원
	2,500만 원 초과 ~ 3,750만 원 이하	400,000원	500,000원
	3,750만 원 초과 ~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	300,000원	400,000원

※ 1회 최대 지원금액: 최대 지원 횟수인 3회를 반영하여,
 “대출 금액(1억5천만원 이내) × 해당가구 기준 지원금리 ÷ 3” 로 계산

○ 지원횟수: 연 1회, 가구 당 최대 3회

※ 기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

5. 신청방법

○ 신청인: 신혼부부 중 대표 1명,

청년은 본인

※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

○ 신청방법: 1. 온라인 접수 (광명시청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 → 부동산/도시개발 → 주택 →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)

2. 방문 접수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

○ 지급방식: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

○ 지급일: 2026. 8월 중

※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(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[붙임1])

○ 문의전화: 광명시청 주택과 민간임대주택 (☎ 02-2680-6332)

6. 신청서류 (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)

- ★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등-가족구성원포함)가 **모두 공개**된 서류만 가능 하며, **열람용**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 **불가**합니다.
- ★ 최근 **1개월**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.
- ★ 서류가 많아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**압축파일**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★ 담당자가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신청서류	비 고	발급처
1	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1부 (“대출자” 신청)	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	공고문 (별지 제1호 ~ 제3호서식)
2	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만 해당)	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	행정복지센터, 정부24
3	임대차계약서 사본		
4	대출 확인 증명서 - 「 금융거래확인서 」	[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] - 금융기관 직인 날인 - 인적사항 - 대출잔액, 대출용도(「주택」, 「임차」, 「전세」 등으로 명기) 대출 상품명, 대출기간 기재	금융기관
5	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증명서	- 2025년 기준 - [★전국★] 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(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) -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- 예시 참조	행정복지센터, 시청 종합민원실, (3,4번 창구) 위택스
6	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	- 2025~2026년 기준 -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- 피부양자일 경우 「자격득실확인서」	국민건강보험
7	급여증명서류 - 「 소득금액증명원 」	- 2025년 기준 -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- 무소득자 :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- 소득없을 경우 예시참조	행정복지센터, 근무처, 홈택스
8	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		신청인(대출자)
9	주민등록표 등본	-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 (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)	행정복지센터, 정부24
10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행정복지센터,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7. 제출 유의사항

○ 임대차계약서(사본)

-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
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(금융권 직인날인)

-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

○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 증명서(2025년 기준)

-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
- 전국기준으로 발급 (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)

○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(2025~2026년 기준)

-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
- 피부양자일 경우 「자격득실확인서」 제출

○ 급여증명서류(소득금액증명원) (2025년 기준)

-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
- 소득이 없을 경우, ‘신고사실없음’ 사실증명원 제출 (홈택스 발급)

8. 기타사항

- 허위·부정한 방법·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지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금의 환수 조치 또는 지원금이 중지됩니다. 다만 해외 이주, 질병 치료 등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.
-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허위 기재,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,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.
-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「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」에 따라 지원합니다.

[붙임 1]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

□ 신혼부부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① 자녀의 수 (동일 주민등록상 자녀)	가. 3인 이상 나. 2인 다. 1인	5점 3점 1점
② 소득수준(부부 합산)	가. 3천만원 미만 나.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다.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라.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마. 6천만원 이상 중위소득 180% 이하	5점 4점 3점 2점 1점
③ 신청인의 광명시 연속 거주기간 (공고일 기준)	가. 3년 이상 나. 1년 이상 3년 미만 다. 1년 미만	3점 2점 1점
④ 장애인 등록여부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(신청인 포함)된 자	2점
⑤ 다문화 가구여부	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	2점
총 점		

□ 청년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① 신청인의 나이	가. 19세 이상 29세 미만 나. 29세 이상 39세 미만 다. 39세 이상 45세 이하	3점 2점 1점
② 소득수준	가. 2천만원 미만 나.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다. 4천만원 이상 중위소득 180% 이하	3점 2점 1점
③ 신청인의 광명시 연속 거주기간 (공고일 기준)	가. 3년 이상 나. 1년 이상 3년 미만 다. 1년 미만	3점 2점 1점
④ 장애인 등록여부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(신청인 포함)된 자	2점
총 점		

※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각 평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